

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12-116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2012. 11



(재)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목 차

I.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개정사항	1
II.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항	4
III. 보육실습 기준 개정사항	6
1. 보육실습 기준	6
2. 보육실습 세부기준	7
3. Q&A	10
4.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안내 ...	13
[부록 1] 보육실습확인서 예시	14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유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자격제도를 개선·보완하여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개정 2011.12.8, 시행 2014.3.1]

I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개정사항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 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자격관련 세부 경력 안내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 업무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II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항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관련 세부 경력 안내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비고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Ⅲ 보육실습 기준 개정사항

1. 보육실습 기준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 개정 2012. 8. 17, 시행 2013. 3. 1

구 분	현 행	변 경(시행 2013.3.1)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종일제 유치원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동일
실습 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실습의 평가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보육실습 세부기준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 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써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
 -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2014년부터는 보육실습 교과목이 3학점으로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대상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분할
 -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I, II로 나눌 수 있음
 - 학점은 각 1학점씩 이수한 경우, 총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2014년부터는 보육실습이 3학점으로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실습기간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전후방학 포함)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

(예시)

Q : 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 I,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 II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에 2주 80시간,
2학기에 2주 80시간 동안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 I, II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
수 인정
 - ※ 2014년부터는 보육실습이 3학점으로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I, II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보육실습 실시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
질적으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
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
어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실습 인정시간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

-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학기 중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지도교사 기준 준수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 직인을 받아 제출
- ※ 보육실습확인서 : 부록 1 참고

3. Q & A

●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습

Q1	A대학에서 보육실습을 제외한 11과목 33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이후 시간제로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습을 이수해도 되나요?
A1	졸업 후 시간제로만 이수한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제로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습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보육실습 기간 및 시간

Q2	주3회씩 7주 동안 보육실습을 이수해도 되나요?
A2	보육실습은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4주, 1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주 3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1일 4시간씩 8주에 걸쳐 총 160시간 이상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나요?
A3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므로 1일 4시간씩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보육실습기간 총 4주 중에서 1주는 주5회(월요일~금요일) 1일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씩, 2주부터 4주까지는 주3회(월요일~수요일) 1일 12시간씩 실습을 이수하여 총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A4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입니다. 실습기간이 4주,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실습 인정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을 준수하지 않았고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보육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보육실습 기간 중에 추석연휴 3일이 있어 보육실습 시간이 4주, 1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육실습 기간 중 추석연휴가 있는 경우 연휴 기간만큼 보육실습을 연속으로 이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 보육실습 기관

Q6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습했는데 보육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6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및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이수해야 하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보육실습 이수당시 실습기관의 인가된 보육정원은 14인이었으나, 보육실습 종료 이후에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인정되나요?
A7	보육실습 이수당시 실습기관의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습당시 실습기관의 보육정원이 14인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

Q8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나요?
A8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하므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취득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9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 지도 중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인정되나요?
A9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시점이 보육실습 중 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시작 이전에 지도교사의 자격을 확인하신 후에 보육실습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실습 평가점수

Q10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을 75점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A10	보육실습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평가점수를 75점 받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11	성적증명서에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P”로 표기되어 있는데 인정되나요?
A11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P”인 경우 보육실습 평가점수(80점 이상, B학점 이상)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안내

-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발급을 위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변경
 - ※ 세부 시행시기 및 방법은 추후 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자격관리 폴더에 보육실습생 관리 메뉴 구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 내용 입력 및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입력된 실습정보를 자격관리시스템에 연동
 - 제출서류 간소화(보육실습확인서의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육실습확인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준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수기로 내용작성 후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재)한국보육진흥원에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준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후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재)한국보육진흥원에 발송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를 통해 보육실습의 관리 강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른 대민서비스 개선효과 기대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 름	주민등록번호	대학명	학과명	이수 교과목(학점)
홍길동	123456-1234567	한국대학교	보육학과	보육실습 (2)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시설종류	주 소	연락처
한국어린이집	보육시설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02-123-4567

3. 실습 지도교사

이 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김자격	보육교사1급	05-1-12345

4. 실습 기간(모든 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 필수)

실습기간	2010년 11월 01일 ~ 2010년 11월 26일(4주간)
실습시간	총 160 시간 (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1일 8 시간)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과장 학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실습 기관 시설 인가 관련 서류)
2.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실습 지도교사의 자격증 사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2. 8. 17)에 따라 보육실습 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13년 3월 1일 이후 실습자부터는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